

서울고등법원

제 32 민사부

판 결

사 권 2014나33255 총회재판위원회판결무효확인 등  
원고, 항소인 서기종

서울 [Redac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박영립, 황적화, 유승룡, 이준형, 신동환

피고, 피항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대표자 감독회장 전용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선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동하, 이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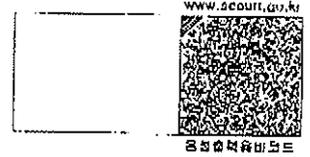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가합8903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

판 결 선 고 2015. 6.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총회재판위원회가 2013. 11. 22. 선고한 2013총일03 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가 피고 산하 서울연회 소속 동대문교회의 담임자인 목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함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 다. 3)항(제3쪽 제10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항 말미의 "[인정근거]"에 "을 제8호종의 2"를 추가한다.

3)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13. 1. 31. 이 사건 교회건물만이 유지재단에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까지 유지재단에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동대문교회에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교회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2,019,966,440원만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일



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동대문교회와 유지재단 모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2036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8. 2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쌍방 모두 상고하여 대법원 2014다67782호로 상고심에 계속중이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의 "2013. 9. 9."을 "2013. 9. 16."로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에게 출교를 명한 이 사건 총회판결이 절차적으로는 ① 법조인이 재판위원 중 1인으로 참석하여야 함에도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② 고소인들이 원고를 고소하기 위하여는 직접 찾아가 권고를 해야 함에도 고소인들이 그러한 절차를 거친 적이 없으며, ③ 이 사건 기소사실로 기소되지도 않았고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범과를 유죄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종전에 이미 처벌받은 범과에 대하여 다시 유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나. 또한 실체적으로도 ① 이 사건 기소사실 중 제1의 가.항 기재 배임행위 범과의 경우, 일반 형법에 따라 배임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만 범과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일반 형법에 따라 배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하였고, ② 이 사건 기소사실 제4항의 경우에도, 동대문교회를 당초 위치에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데도 유지재단이 교회 이전을 미루는 바람에 교인들의 중의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수행한 것이고 동대문교회의 새로운 부지를 유지재단 명의로 매수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교리와 장정을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일 뿐 원고는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하자가 있다.

다. 이러한 하자들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게 되므로, 피고 감리회를 상대로 이 사건 총회판결이 무효이고 원고가 동대문교회  
회의 담임자인 목사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실시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부분 실시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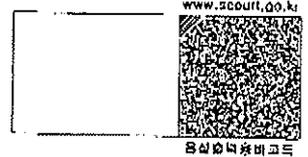
**나.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실시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 나. 3)항(제14쪽 제5행부터 제16쪽 제15행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제 4. 나.항 기재와 같으  
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죄형법정주의, 불고불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의 하자**

가) 갑 제2,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제2조 제2항에서는 교역자와 교인은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심  
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총회재판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기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중 심사위원회가 작성한 기소장에 적시되지 아니한 조항들을 적용한 사실, ③ 특히 이  
사건 기소사실 제3항의 경우, 원고가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공문을 동대문교회로 발송





하도록 주소지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위 교리와 장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 ④ 위 기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기소장에는 위 교리와 장정 제4조 제7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조항을 적용하였고, 위 조항이 결국 원고에게 출교를 명하는 재판의 근거가 된 사실, ⑤ 이 사건 기소사실 제5항의 경우, 당초 기소장에는 위 교리와 장정 제4조 제2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사건 총회판결은 연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면서 위 제4조 제2항을 적용한 사실, ⑥ 원고는 이 사건 총회판결 이전인 2012. 8. 21.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 동대문교회 부지 등의 공원화계획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공문의 내용을 즉시 피고 감리회 또는 유지재단에 알려 범감리교단적으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 임원회나 구역회의 결의 없이 서울특별시에 동대문교회 부지 및 건물을 수용당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불법한 방법으로 교회의 행정조치를 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 2011. 2. 13. 소집된 구역회의에 상정된 의안의 표결방법을 규정에 따라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음에도 거수표결을 통해 가결시킴으로써 규칙을 오용하였다는 범과사실로 정직 5월의 판결(피고 총회재판위원회 2012총일01)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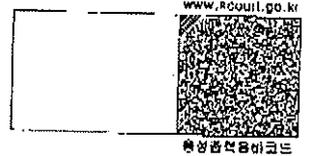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고불리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총회판결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을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해 보더라도, 교회의 재판은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제1조), 벌칙의 종류 역시 견책, 근신, 징직, 면직, 출교로 한정되어 있으며(제5조 제1항), 피고소·고발인과 심사위원장 외에 고소·고발인 역시 상소할 수 있고(제54조), 전체적인 체계상으로도 실체적인 면과 절차적인 면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등 목적과 구조, 체계 등에 있어서 일반 사회에서의 법률에 따른 형사재판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②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제8조가 비록 '이 재판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단순히 일반 사회의 형사법규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피고 감리회의 재판위원회가 법조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으므로, 교회의 재판에서도 일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불고불리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또한,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제7편은 제3조와 제4조에서만 일반범과와 교역자의 범과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기소사실 중에는 위 제3조 및 제4조 이외의 조항들이 적시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그 중 일부에는 위 제3조 및 제4조가 아예 언급되어 있지도 않은 점, 기소절차를 담당하는 심사위원회는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법상 고소와 기소행위에 대하여 일반 형사소송절차에서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공소제기 요건과 방식 기타 법적 완결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점, 이 사건 총회판결은 심사위원회가 작성한 이 사건 기소사실 자체는 사소한 문구 수정 이외에는 특별한 수정 또는 가감 없이 그대로 인용한 후,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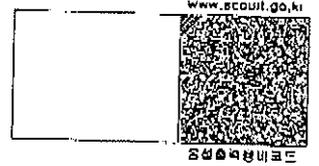


로 뒤에 위 기소사실과 관련된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중 어느 조항의 범과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밝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위원회가 반드시 심사위원회가 의율한 범과 조항에 엄격하게 구속되어 이에 대한 유·무죄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기소사실 제3항의 경우 기소장에도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제4조 제2항이 적시되어 있고, 이 사건 기소사실 제4, 5항과 관련하여 기소장에는 적시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총회판결에서 적시된 조항의 경우, 고소인들의 상소이유서(을 제3호증의 16)나 각 준비서면(을 제3호증의 17, 19)에 구체적인 서술과 함께 해당 조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소장에 첨부된 고소장에도 '원고가 감리회의 전통적 교리를 부인하고,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범과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출교·면직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해명이나 방어의 기회가 전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론에 임하였으며, 위 변호인이 재판위원회에서 원고의 입장을 대변하여 구술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문의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가 2012. 8. 21.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받은 정직 5월의 판결의 범과사실과 이 사건 총회판결의 범과사실은 그 배경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의 동대문교회 부지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동대문교회의 이전 관련 문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종전 판결의 범과사실과 이 사건 총회판결의 범과사실이 반드시 중복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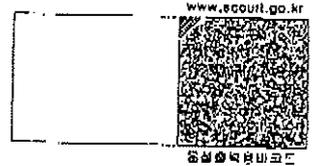
1) 이 사건 총회판결에서 이 사건 교리와 장정의 의미를 해석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여기에 포섭시켜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고 감리회의 자율적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종교단체의 자율적 결정에 대한 존중은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 보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그 징계결정에 대한 국가 사법기관의 심사에서도 종교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4호증, 을 제3호증의 15,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3,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교리와 장정에 의할 경우, 총회재판위원회가 이 사건 총회판결에서 의율한 범과 중 원고를 출교1)에 처할 수 있는 범과는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제4조 제7항에서 정한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가 유일하다(제5조 제3항). 그런데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사건 총회판결에서, 원고가 동대문교회를 대표하여 유지재단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개체교회의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되도록 정한 이 사건 교리와 장정을 부인하는 반감리회적 행위이고, 감리회의 제도와 전통을 거부하여 피고 감리회 회원이기를 포기하고 위 교리와 장정을 고의로 위반해서라도 유지재단 소유 재산을 원고가 대표로 있는 동대문교회의 독립재산으로 이탈시켜 사유화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동대문교회의 새로운 부지를 유지재단이 아닌 동대문교회 명의로 매수한 점'과 '유지재단 명의로 예치된 매매대금은 유지재단 명의의 대체재산

1)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제6조 제5항에서는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역자들 출교에 처할 수 있는 범과는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제4조 제7항) 이외에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거술하였을 때"(제4조 제8항) 뿐이다.





취득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동대문교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듣고 있다.

나) 이 사건 교리와 장청 제2편 제7장 제22조에서는 "개체교회 등이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장 제23조에서는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처분하거나 기채 등 의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개체교회가 유지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것은 유지재단에게 그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겠다는 의사보다는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개체교회에 있는 경우가 많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참조),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교회법이 아니라 국가의 강행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판결 등 참조).

다) 동대문교회는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그 인근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2008. 2.경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동대문교회가 속한 구역회는 2011. 2. 13. 이 사건 토지를 서울특별시에 협의매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대문교회는 2011. 4. 15. 대책위원회 및 기획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수원시 소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교회 이전부지로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2011. 4. 24.에 열릴 구역회에 보고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동대문교회는 2011. 4. 15. 경기도시공사와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2,593㎡에 관하여 매매대금 5,976,865,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는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30%는 2011. 10. 15., 2차 중도금





30%는 2012. 4. 15., 잔금 30%는 2012. 10. 15. 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지체시 그 일수에 따라 연 9% 내지 연 13%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동대문교회가 속한 구역회에서는 2011. 4. 24. 위 연석회의의 결정을 승인하였다.

라) 동대문교회는 2011. 5. 21. 유지재단 앞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교회건물의 처분(공공용지 협의매도) 승인신청을 하면서, 보상금액 19,914,192,920원을 유지재단으로부터 수령함에 있어 위 보상금을 5년 이내에 종교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과 사용시 계반서류를 구비하여 유지재단에 예치금 사용 승인신청을 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보상금 송금 청구서 및 각서 등을 첨부하였으나, 유지재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마) 그러자 동대문교회는 2011. 12. 7. 유지재단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교회건물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12. 16. 이 사건 토지 및 교회건물의 수용재결을 하고 서울특별시가 동대문교회와 유지재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 계속중이던 때에 피고 감리회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동대문교회가 유지재단을 상대로 2013총특일01호로 제기한 승인요청 사건에서 2013. 8. 27. 이 사건 토지 및 교회건물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단체인 동대문교회 소유라고 판단하면서, 유지재단으로 하여금 그 수용에 따른 공탁금을 동대문교회가 단독으로 출급받는 것을 승인하고 그 돈으로 광교택지개발지구 종교시설 부지를 매수하여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일을 승인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지재단은 피고 감리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9448호로 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4. 12. 11. 위 대법원 91다29446



판결의 법리에 따라 유지재단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의 피고 보조참가인 동대문교회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5나6953호로 항소심 계속중에 있다.

3) 제1항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문 제1항의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참작하면, 사법기관이 종교단체의 자율적 결정을 가급적 존중할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기소사실 제4항의 범과를 원고가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하여 원고에게 출교 처분을 한 이 사건 총회판결은 그 실체상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기소사실 제1항 말미의 배임행위 관련 범과에 관하여 이 사건 총회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에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총회판결에서 위 범과에 대하여 의율한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제3조 제10항의 범과를 저지른 교역자에 대하여는 견책, 근신, 정직 또는 면직의 벌칙만 가능하고(제5조 제3항, 제4조 제1항) 출교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출교 처분을 한 이 사건 총회판결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상 위 배임행위 관련 범과에 관한 실체적 하자 유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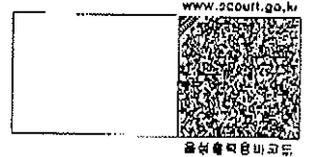
가) 이 사건 총회판결에서 "원고가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였다(제4조 제7항)"고 평가한 행위는 "원고가 동대문교회를 대표하여 유지재단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비록 그 이면에 피고 감리회 내부 조직의 운영, 규율 등에 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교회건물 소유권이 누구에 귀속되는지와 그에 따른 논리적 귀결로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분쟁은 교회법이 아니라 국가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사법상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적 분쟁임이 분명하다.

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교회의 매매" 또는 "사리사욕"과 같은 요건은 반드시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는 통상적인 어의(語義)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리와 장정 이면에 있는 종교적 합의 등을 고려하는 피고 감리회의 해석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동대문교회의 대표자로서 피고 감리회의 유지재단을 상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감리회의 총회재판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출교에 처한 이 사건 총회판결의 유·무효를 가림에 있어서는 종교단체의 자율성 못지않게 그 구성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도 존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 당사자 일방이 속한 피고 감리회가 상대방인 동대문교회에게 사법상의 권리 실현을 포기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을 그대로 승인하는 셈이 되어 동대문교회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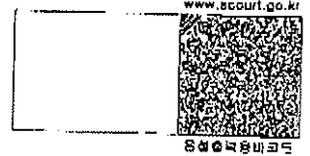
다) 원고가 동대문교회의 대표자로서 유지재단이 아닌 동대문교회 명의로 교회 이전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원고가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즉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이전부지 매매계약은 동대문교회 대책위원회 및 기획위원회 연석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고, 그 후 소속 구역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원고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이전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유지재단에 보상금 송금 청구서 및 각서를 제출하면서 공공용지의 협의매도로 이 사건 토지 및 교회건물



의 보상금을 유지재단이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동대문교회에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종교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것과 사용 전에 유지재단에 사용 승인신청을 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동대문교회 명의로 이전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지재단으로부터 그 승인을 거부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동대문교회를 피고 감리회로부터 이탈시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로 동대문교회 명의로 이전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그 이후에도 원고가 이전부지 매매계약의 계약 당사자를 동대문교회로 유지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유지재단에서 이전부지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유지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등을 떠안아야 하는 손해 등을 이유로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다(원고가 이 사건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동대문교회 또는 피고 감리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들어 원고가 동대문교회를 피고 감리회로부터 이탈시켜 사유화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라) 원고는 피고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교회건물을 협의매도하는 방안을 서울특별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5월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일부 교인들이 동대문교회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었으나, 이미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대문교회가 이 사건 토지 및 교회건물을 서울특별시에 협의매도하기로 결정하고 교회 이전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동대문교회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마) 또한 동대문교회가 경기도시공사와 체결한 이전부지 매매계약의 1차 중도금



지급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유지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교회건물의 처분 승인을 받지 못한 동대문교회로서는 교회 이전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동대문교회를 대표하여 유지재단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두고 "원고가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라. 소결론

원고가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를 출교에 처한 이 사건 총회판결은 무효이고, 이 사건 총회판결이 무효인 이상 원고의 동대문교회의 담임자인 목사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 감리회가 이를 닦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남석      유남석

   판사      이석재      이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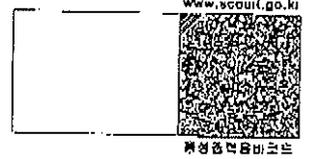




판사

권기만

Handwritten signature and official seal of the judge



# 등본입니다.

2015. 6. 26.

서울고등법원

법원주사보 김동우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